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29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1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6.
판 결 선 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구하는 주위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시가표준액 등 객관적인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고, 시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항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28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수급사정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임에 비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과세기술상의 필요성도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이때에도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져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등 취득세의 과세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검증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적정가격 검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적정가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